

# 벤처기업 지원 및 관리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원이 재직 중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그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외부에서 본교 내에 벤처기업을 창업할 경우에 벤처기업 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본교 전임교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겸직 또는 휴직을 신청한 경우와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전임교원이 본교의 시설 및 장소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승인을 신청한 경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외부 벤처기업이 본교 내에 입주하였을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④벤처기업 창업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한다.
2. “참여”라 함은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3. “벤처기업창업교원”이라 함은 벤처기업창업겸직교원 및 벤처기업창업휴직교원을 말한다.
4. “벤처기업창업겸직교원”이라 함은 벤처기업을 창업 또는 참여하고자 총장으로부터 겸직승인 받은 전임교원을 말한다.
5. “벤처기업창업휴직교원”이라 함은 벤처기업을 창업 또는 참여하고자 총장으로부터 휴직승인 받은 전임교원을 말한다.
6. “입주기업”이라 함은 본교 벤처기업창업교원이 본교 내에 창업한 벤처기업이나 외부에서 본교 내에 창업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 제2장 벤처기업창업심의위원회

**제4조(구성)** ①벤처기업 창업에 관한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선문창업보육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8.11.1>  
 ④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11.1>  
 ⑤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 ①벤처기업 창업 지원 및 관리 규정의 제·개정
- ②벤처기업 창업 지원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 ③벤처기업 창업교원 승인 및 취소 여부 심의
- ④벤처기업 창업교원에 대한 지분배분 및 입주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기준에 관한 사항
- ⑤벤처기업 창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⑥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장 벤처기업 창업 교원기준 및 승인절차

**제6조(자격 및 신분)** ①본교의 전임교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벤처기업 창업교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청산된 벤처기업의 벤처기업 창업교원은 벤처기업이 청산된 후 3년간 벤처기업 창업교원을 재신청할 수 없다.
- ③창업기간 중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며, 교원인사규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인정한다.
- ④벤처기업 창업 겸직교원의 창업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되, 벤처기업 창업 휴직교원은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⑤벤처기업 창업 겸직교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나, 벤처기업 창업 휴직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 ⑥휴직교원의 처우는 정관 제43조 제2항을 적용한다.

**제7조(겸직허가)** ①본교의 전임교원은 직무상 능력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벤처기업 창업 겸직교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 ②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에 대한 겸직허가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인 1벤처기업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③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벤처기업창업겸직교수 허가기간이 남았더라도 해당 기업의 겸직은 종료된다.

**제8조(겸직휴직허가)** ①본 대학의 전임교원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창업겸직교수 허가기간 중에 휴직할 수 있다.

- ②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9조(겸직교수 및 창업 승인)** ①본 규정 제3조 또는 제4조에 의한 벤처기업창업겸직교수 또는 벤처기업창업겸직교수 휴직 허가는 교무처에서 득하고, 교내 벤처기업 창업은 제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산학협력단에 신청을 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1.1)

- ②총장의 승인은 벤처기업의 대표자와 창업승인 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협약의 내용에 따라 벤처기업을 본교 내에 창업하고 운영한다.
-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교 내에서 창업을 할 수 없다.
  1. 소음, 진동, 악취, 공해, 폐수 등이 발생하여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사업
  2. 학부 및 전공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
  3. 기타 본교 내에 설립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벤처기업 창업 교원신청)** ①벤처기업 창업 및 참여하고자하는 교원은 소속대학 학 장 및 소속대학원 원 장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단에 벤처기업 창업 신청서(별지 제 1호서 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

②본교 내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교원이 제출해야 하는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실험실 공장설치 승인신청서(실험실 사용허가 신청서) 또는 전문창업보육센터 입주승인 신청서
2.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확인서
3. 벤처기업 겸직교수 허가서
4. 사업계획서
5. 출연금 및 사용료 납부계획
6. 서약서(별지 제 2호 서식)
7. 시설 배치도 등

③본교 외에서 벤처기업 창업을 하고자하는 교원이 제출해야하는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장소 임대계약서
2.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확인서
3. 벤처기업 겸직교수 허가서
4. 사업계획서
5. 출연금 납부계획
6. 서약서(별지 제 2호 서식)

**제11조(벤처창업기간)** ①벤처기업 겸직교수의 창업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신청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②단, 벤처기업 겸직 휴직교원의 창업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이 경우에 임용기간 중 잔여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벤처기업 창업 휴직교원의 창업기간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1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입주기간)** ①전문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 본교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 은 전문창업보육센터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 이외의 입주기업이 본교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단, 필요하 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체결)** ①벤처기업 창업교원은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내 벤처 기업 창업승인 협약서(별지 제 3호 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

1. 창업대상기술
2. 대학지원에 대한 상세내역
3. 대학지원에 대한 보상계획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외부에서 입주한 벤처기업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4장 벤처기업 창업교원 지원, 관리 및 의무

**제14조(대학의 지원 및 관리)** ①본교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설립지원
2. 벤처기업 경영지원 및 기술지원
3. 본교 내 벤처기업의 경우 전문창업보육센터 입주, 실험실·연구실·후생복지시설 이용
4. 정보통신망 시설 지원
5. 외부 벤처기업 입주 시 공간, 전기, 부대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의 지원 및 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한다. <개정 2008.11.1>

**제15조(창업절차이행)** 벤처기업 창업교원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 한다.

**제16조(기여방법)** ①본교 내에 설립된 벤처기업은 본교에서 승인한 창업기간 내에 해당 기업 또는 대표자가 성공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방법은 아래의 1, 2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최초 주식회사 설립당시 출자한 자본금에 대한 벤처기업 창업교수(벤처기업 임원교수 포함)의 주식 1% 이상의 지분으로 한다.
2. 국내외 증권시장 상장 또는 등록 당시 총 발행주식에 대한 벤처기업 창업교수(벤처 기업 임원교수 포함)의 주식 1% 이상의 지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원칙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1. 주식공모를 하지 않고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매출액이 연간 20억원을 초과하는 해로부터 성공부담금 납부 누적총액이 1억원 될 때까지 벤처기업 창업교수(벤처기업 임원 교수 포함)의 몫에 대한 매출액의 0.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공부담금 납부 누적총액이 1억원을 초과한 후에는 납부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주식공모를 하지 않고 대외의 기업에 기술이전 등으로 벤처기업을 정리할 경우에는 기술이전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한 벤처기업 창업교수(벤처기업 임원교수 포함) 몫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본교의 전임교원이 겸직허가 또는 휴직허가를 받아 교외에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성공한 경우에도 주식, 스톡옵션, 현금, 현물 등을 본교에 기부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①벤처기업 창업교원 및 임주자는 매년 회계결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②승인사항 및 계약사항 변경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벤처기업의 의무)** ①본교 내에 설립한 벤처기업은 대학의 학사운영에 협조하고,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본교 내에 설립한 벤처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통신료, 상하수도료 등의 공과금은 벤처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본교 내의 시설과 장소를 반환하여야 하며 퇴거 시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제 비용도 벤처기업이 부담한다.

**제19조(지원중단)** 벤처기업 창업교원이 규정위반,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운영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거쳐 벤처기업 창업교원 승인취소, 입주시설 퇴거 등의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업무공백보완)** 벤처기업 창업교원은 창업 및 참여에 따른 업무공백을 보완하여 교수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규정 및 경과조치)** ①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규정 시행 이전에 벤처겸직교수의 연장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창업승인에 관한 계약을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벤처기업창업승인협약체결 적용기간은 벤처기업겸직교수 연장일로부터 적용한다.

#### **부칙<200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8.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 서식】

교내 · 교외 벤처기업 창업 신청서(해당란에 √ 표시)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주소													
업종					전화				FAX				
연구원 현황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기자재 및 시설물	교내	①					⑥						
		②					⑦						
		③					⑧						
		④					⑨						
		⑤					⑩						
	교외												
상기 벤처기업의 교내/외 창업에 동의합니다.													
소속 교수	성명										소속 학부 장		
	날인												
벤처기업지원및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교내/외 벤처기업 창업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													
선문대학교 총장 귀하													
벤처기업 창업신청 구비서류													
교내창업						교외창업							
1. 실험실공장설치(창업보육센터입주)승인신청서						1. 장소 임대 계약서							
2.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2.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3. 벤처기업 겸직(휴직)교수 허가서 사본						3. 벤처기업 겸직(휴직)교수 허가서 사본							
4. 사업계획서(출연료 및 사용료 납부계획 포함)						4. 사업계획서(출연료 납부계획 포함)							
5. 시설배치도						5. 서약서							
6. 서약서													

【별지 제 2 호 서식】

**벤처기업 대표이사 (임원) 서약서**

벤처 기업	명 칭			
	직 위		성명	
	소재지			
	주소			
	업 종			
	전화번호		FAX	

본인은 벤처기업 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임원) 겸직을 허가 받아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1. 선문대학교 벤처기업지원및관리규정과 본교의 방침을 준수한다.
2. 벤처기업 의 창업 및 운영에 있어서 선문대학교 및 소속 학부(과) 또는 전공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기여사항
  - 교내창업 대표이사 및 임원 : 교내 벤처기업 창업 협약서로 대체되므로 생략
  - 교외창업 대표이사 : 벤처기업 대표이사 는(은) 최초발행주식중대표이사의몫 0.5% 이상 주식을 선문대학교에 기부한다.
  - 교외창업 임원 : 벤처기업 의 임원직 겸직을 허가 받았기에 벤처기업에서 받은 급부(주식, 급여) 의 0.5% 이상을 선문대학교에 기부한다.

20 년 월 일

위원인 : 성명 (인)

선문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 3 호 서식】

## 교내 벤처기업 창업승인 협약서

선문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교수(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선문대학교에 소속된 “을”의 벤처기업 창업 승인에 따른 “갑”, “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물 표시)** “갑”은 “을”이 창업대상기술의 교내 실험실공장/사업장으로 창업보육센터(이하 “목적물”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창업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3조(창업기간)** “을”의 목적물 내에서의 창업 및 운영 기간은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로 한다.

**제4조(“갑”의 의무)** “갑”은 “을”의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을”의 벤처기업 대표자/임원 겸직 허가
2. 겸직기간내의 휴직 허가
3. 주식회사 설립지원
4. 벤처기업 경영지원 및 기술지원
5. 선문창업보육센터 입주, 실험실 또는 별도의 연구실 사용 지원
6. 후생복지시설 이용 및 정보통신망 등 시설 지원

**제5조(“을”의 기부)** “을”은 벤처기업지원및관리규정 제16조(기여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갑”에게 기부하며, 협약체결 시부터 “갑”은 “을”의 주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1. 기여내용 :
2. 이행방법 :
3. 이 행 일 :

**제6조(표시물의 게시)** ①“을”이 사업상 표시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표시물 게시 규격 등을 정하여 “을”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을”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 사용)** ①“을”은 “갑”의 자산과 “을”의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교내의 공용시설 및 개인 자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을”이 실험실 이외의 별도 사용공간이 필요하여 배정 받은 경우에 그 공간에 대한 용도변경 및 신규 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을”이 자체적으로 사용한 각종 공과금(전기, 통신, 상하수도료) 등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을”이 전시실, 회의실, 장비실 등 공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서를 미리 “갑”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①교내벤처기업은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은 교내벤처기업의 퇴거 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9조(손해배상)** “을”의 벤처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의 시설물을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입주자가 그 손해시설과 동등한 제품 또는 동등한 금액으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숙박제한)** 벤처기업 내에서의 숙박은 금지한다. 다만, 연장업무 등으로 숙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 반출입)** “을”의 벤처기업이 “갑”의 시설로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화물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부득이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용기 등 위험방지시설을 갖추고 “갑”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소음 및 악취, 미풍양속의 저해 등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을 저해하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 부득이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갑”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반입할 수 있다.
3. “갑”은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소독 및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방재관리)** “을”은 “갑”의 방재관리에 관한 제 규칙 및 비치된 방재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소각행위를 할 수 없다.
2. 방재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담당기관 또는 “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갑” 또는 담당기관이 실시하는 방재관리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4. 기타 “갑”이 방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입출입관리)** ①“을”의 벤처기업 내 출입문 열쇠는 “을”과 “갑”이 각 1개씩 보관한다.

②“을”이 열쇠 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신고의무)** “을”의 벤처기업이 1개월 이상 교내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갑”에게 서면으로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보험가입)** “갑”은 “을”에게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보험금을 “을”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6조(목적물 출입)** “갑”은 보안, 위생, 방범, 방화, 구호 등 관리상 급박한 경우에는 “을”의 벤처기업 구역 내에 출입할 수 있다.

**제17조(면책)** “갑”은 천재지변 또는 대학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을”의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일지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협약내용 해지 및 변경)**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갑”은 “을”과 협약을 해지하고, “을”의 벤처기업 창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을”이 승인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갑”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갑”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망 또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협약의 불이행 또는 “갑”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②“갑”이 협약을 해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사유 및 예정일을 명시하여 예정일 20일 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을”이 해지 및 승인 취소 예정일을 통보 받고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갑”에서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에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변경사항 통지 의무)** “을”은 사업 및 연구과제 내용의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서면접수 후 10일 이내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관할)** 본 협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은 “갑”의 주된 사무소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1조(기타)**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벤처기업지원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갑 : 선문대학교  
총 장 황 선 조 (인)

을 : (주)  
대표이사                      (인)